

1.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63,151,556	19,894,547
일반회계	616,204,469	18,486,134
특별회계	46,947,087	1,408,413
기타특별회계	46,947,087	1,408,413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4,158,388	124,752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522,859	105,686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10,900	6,3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78,000	17,34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904,047	237,121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57,418	25,72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08,793	21,26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52,264	124,568
수질개선특별회계	18,502,294	555,069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6,352,124	190,564

제 2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30,140,618천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 24,620,618천원을 포함한다.

제 4 조 202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8,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 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